

문학 표현의 자유와 한계 (I)

— 독일 문학권의 사례 —

정혜영*

1. 서론

인간이 자기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런 성취의 욕구이며 자아 실현을 위한 기본권에 속한다. 인간의 창조적 사고와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이자 그 가장 빛나는 성취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문학이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윤리적 종교적 이유나 또는 정치적 목적에서 문학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여러 형태의 검열제도와의 마찰은 문학 자체의 역사만큼 오래 되었다.

1445년 구텐베르크에 의한 활자 인쇄술의 발명은 유럽 정신사에 큰 변혁을 일으킨 기술 혁명이었다. 책은 이제 궁정이나 교회의 진열장에 보관되는 값비싼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의 원천이 되었다. 이와같이 출판물의 전파력과 영향력이 증대되는 추세와 비례하여 국가 또는 교회 등 제도권이 언론 출판에 가하는 억압도 첨예화되어 왔다. 자유민주주의의 발상지이며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으로 보장된다는 서구 선진사회에서조차 “문화의 초석 가운데 하나인 문학의 자유가 항상 위협 받아왔고 오늘날까지도 거둬 새롭게 투쟁하여 얻어야 하는”¹⁾ 실정이다.

* 이 논문은 1992년도 한양대학교 교내 연구비의 지원으로 씌어졌음.

** 한양대 독문과 교수

1) Hans J. Schütz: Literaturfreiheit und Buchzensur in Europa. In: Der Zensur zum Trotz, hrsg. v. Herzog August Bibliothek Wolfenbüttel 1991.

이 글에서는 독일문학권을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와 이에 맞서는 투쟁의 역사를 조명해 보고 문학 표현의 자유의 신장과 그 한계를 구명함으로써 우리의 현실에 대한 시각을 조정하는데 목표를 둔다. 이러한 관심은, 1960년 이후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현대화 과정에 수반한 정치적 격동기에 언론 출판에 대한 탄압이 빈번히 자행되었으며, 그것이 문학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촉구한데서 비롯되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이 과연 아무 제약없이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또 이와 반대로 타율에 의한 표현 자유의 제한이 과연 당위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은 자명한 듯 하면서도 많은 토론의 여지를 남기는 문제이다. 여기서는 전문적인 법이론의 차원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 독일문학사가 보여주는 갈등과 억압의 역사적 사례들을 보고 우리의 문학현실에 맞는 시각을 정립하는데 첫 단계 준비작업으로 삼고자 한다.

2. 본 론

2.1. 표현의 자유와 제한

우리나라와 독일을 비롯하여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은 헌법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10조의 정신에 따라 동법 제21조 1항과 2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서독 정부 수립후 1949년 5월에 발효된 기본법 제5조 1항에서 “모든 국민에게 말과 글, 영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전파

S. 1: „Die Freiheit der Literatur, eine der Grundlagen der Kultur, war immer bedroht und muß bis heute immer aufs Neue erstritten werden.“

하며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출처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검열은 시행되지 아니한다.”²⁾라고 못박고 있다. 동법 5조 2항은 그러나 이러한 자유가 청소년 보호법, 개인적 명예법 등 보통법의 규정으로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왜 필요한가에 대하여 미국의 헌법학자 에머슨 Thomas I. Emerson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는 다음 네가지 전체에 근거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1)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자기완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하다.

2) 표현의 자유는 지식을 발전시키고 진리를 발견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3) 표현의 자유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이다.

4) 표현의 자유는 보다 적합하고 안정된 사회를 성취하고 건전한 분열과 합의 consensus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한 것이다.”³⁾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고 인간 본성을 부인하는 것⁴⁾이라고 에머슨은 지적하였다. 위의 네가지 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여러 측면을 적절히 요약 설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양 문화사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큰 비중을 가지고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시기에 인간의 자아에 대한 인식이 급성장하는 것과 때를 같이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이론적 근거로서 개인주의 원리가 첫번째 명제로 나타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일 것이다. 둘째로 지식의 발전과 진리의 발견을 위하여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의견 교환이 필수적이다. 만약 공개 토론이

2) Grundgesetz Art. 5. Abs. 1: „Jeder hat das Recht, seine Meinung in Wort, Schrift und Bild frei zu äußern und zu verbreiten und sich aus allgemein zugänglichen Quellen ungehindert zu unterrichten. [...] Eine Zensur findet nicht statt.“

3) 팽원순: 매스컴유니케이션 법제이론, 서울, 1988 개정판. S. 58 f. 에서 전제.

4) Zitiert nach: ebenda. S. 59.

억제되고 통제나 조작 Manipulation에 의하여 진리나 의견 형성 Meinungsbildung이 왜곡된다면 그것은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나 국가 또는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 점에서 개인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된다. 세번째와 네번째 명제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의미가 전면부에 부각되어 있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건전한 분열과 합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가 요구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 성립과 유지 발전에 불가결한 핵심 요소임을 뜻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효용론이 과연 무제한적이고 절대적인 표현의 자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한 실정법상의 해답은 우리나라와 독일의 헌법에서 제한의 규정으로 나타나 있다. 우리 헌법 제21조 4항에 의하면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또 제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마찬가지로 독일 기본법도 앞서 본 제5조 2항에 이어 제18조에서는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에 대항하는 투쟁에 오용될 경우”⁵⁾를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개인의 명예와 사회 윤리의 보호, 국가 안전 보장이라는 명제는 설득력있는 법적 근거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명분하에 독일의 제3제국 시대에 자행된 문화계 탄압 정책이나, 우리나라에서 지난 수십년 동안 공권력이 언론 출판과 문학표현의 자유를 직접 간접으로 억압해온 사실을 돌이켜 볼때, 이 문제는 이론적 측면과 실제 사례들에 대한 신중하고 다층적인 분석을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밖에는 해답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미풍양속의 보존과 국가 안전 보장을 빙자한 정권의 법적용 남용 사례 뿐만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 즉 표현의 자유를 그럴듯하게 앞세운 이권추구나

5) Vgl. Grundgesetz Art. 18.

상업주의 등의 위험도 만만치 않고, 이 두가지의 한계가 다 매우 모호하기 때문이다.

바이마르 헌법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법제에 결정적 역할을 해온 독일의 역사적 사례들을 검토해 보는 것도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첫 단계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2 독일 검열제도의 기원

독일어의 검열 *Zensur*이라는 말의 어원은 라틴어의 *censura*이다. 즉 검열, 평가라는 뜻으로, 기원전 366년부터 제도화된 로마 감독관청의 업무를 지칭하였다. 감독관의 업무는 오늘날의 회계감사와 참정권, 군사현황, 공물수납 등에 대한 목록작성에서 명예와 윤리에 관한 재판 관할권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것이었다.⁶⁾

한스 마그누스 엔첸스베르거 Hans Magnus Enzensberger는 그의 에세이 『시와 정치』⁷⁾에서 플라톤의 저서 『공화국 *politeia*』을 인용하면서, 유럽의 검열제도의 기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것은 유럽의 역사 만큼 오래된 악몽이다. 문인들이 무엇을 써도 좋은가, 무엇을 써서는 안되는가에 관해서는 국가 이성이 결정한다. 기강과 품위는 존중되어야 한다. 신들은 항상 선하다. 통치자와 상관에 대하여 불리한 것은 결코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된다. 영웅들은 어떤 경우라도 칭송해야 한다 [...] 통제 위원회는 주제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식이 허용되며 어떤 어조가 바람직한가도 지시한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조화가 요구된다 [...] 한마디로 긍정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유해한 자들은 추방당하거나 제거되고 그들의 작품은 금지, 또는 검열당하고 삭제된다.

6) Vgl. Reallexikon der deutschen Literaturgeschichte. Bd. 4. Berlin 1984. S. 998.

7) Hans Magnus Enzensberger: Poesie und Politik. In: Einzelheiten II. Frankfurt a. M. 1970.

2000년 이상 전에 한 발칸소도시 국가에서 명문화된 이 낯익은 원칙들이 유럽의 문학과 정치에 대한 토론의 시초에 자리잡고 있다. 그 이후 이 원칙들은 전 지구상에 전파되었다. 그것은 증기 방망이처럼 끔찍하게 규칙적으로, 둔중하고, 단조롭고, 광포하게 역사를 관통하여 울리고 있다.”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치자나 종교계는 팬의 위력에서 그들의 독점적 지배권에 대한 위협과 도전을 느꼈던 것 같다. 수천년을 두고 지배권력에 의해 행해진 서적 탄압이 그 증거이다. 체제와 종교 및 도덕적 인습에 반대하거나 지배계층의 이익에 위배되는 작품은, 그것이 대중에게 끼칠지도 모를 영향력을 우려하여 금지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러한 책의 저작자는 박해를 받았다. 문헌의 사전 검열이 체계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1550년대에 가톨릭 교회가 금서목록 *Index librorum prohibitorum*을 도입한 것이 효시가 되었다. 이 목록은 400여년을 지속하다가 1966년에야 폐지되었다.⁹⁾ 그러나 그 어느 시대에도 금지된 사상을 주장한 학자나 예술가들은 그들의 지적(知的) 활동에 대한 검열과 박해에 저항없이 굴복한 적이 없었다. 탄압에 대항하다가 화형당하거나 감옥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사례들은 이미 전 세계인에게 알려져 있다. 그 밖에도 교묘한 전략으로 검열과 억압에 대응하거나, 추방당한 후에도 외지에서 저항을 계속하고, 지하 출판, 국외 출판, 발행일자 변조 등의 방법으로 검열을 회피한 경우도 많았다. 한마디로 문학사는 문학표현의 자유를 얻기 위한, 그리고 이를 제한하려는 외부의 탄압에 대항하는 투쟁과 저항의 궤적이기도 하다. 이러한 투쟁의 역사에 큰 이름을 남긴 독일 문학권의 저술가들에 대한 기록을 조사하면서, 그들이 속해

8) ebenda. S. 113.

9) Vgl. Werner Schreer: Die Bücherzensur in der katholischen Kirche in Geschichte und Gegenwart. In: Der Zensur zum Trotz. a. a. O., S. 15. 가톨릭 교회의 금서목록에는 예콜들면 볼테르와 데카르트의 저서들과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등이 들어있었다. 1966년 이 목록은 효력이 정지되었으나, 가톨릭 교회에는 '신앙의 보존'을 위하여 다른 형태의 검열제도들이 존속하고 있다.

있던 시대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금서를 출간 배포한 출판 인쇄업자들과 서적상들의 역할을 되새겨 보게 된다. 또 일찍이 시대의 제약을 뛰어넘는 안목으로 계몽적 서적들을 구해 읽은 독자들과 “바구니 속에 책을 숨겨”¹⁰⁾ 독자들의 손에 전해 준 무명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¹¹⁾

2.3 요하네스 로이힐린과 탈무드 사건

르네상스와 인간주의의 새로운 세계관이 인쇄술의 발달에 힘입어 급속히 전파되어 기존의 가치질서와 지배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자 서적에 대한 탄압의 강도가 높아졌음은 자명하다.

독일에서 일어난 최초의 큰 사건은 16세기 초 유대교의 탈무드에 대한 박해로 기록되어 있다.¹²⁾

종교개혁시대에 신학자들은 종교분열의 책임을 유대교의 성전탕으로 돌렸다. 특히 도미니크 교단이 유대교의 서적들을 폐기하는데 앞장섰다. 당시 쾰른에는 기독교로 전향한 요하네스 페퍼코른이라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칼 도미니크 교파의 사주를 받고 히브리어로 된 유대인들의 성전들을 폐기해야 한다는 글을 발표하였다. 탈무드에는 모독적인 관습과 예수와 성모마리아를 모욕하는 내용이 적혀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는 1509년 막시밀리안 황제의 허락을 얻어 마인강변의 프랑크푸르트를 비롯한 몇몇 도시에서 탈무드를 압류하기 시작했다. 마인츠 대주교와 유대인들의 항의로 의구심이 생긴 황제는 학자들에게 유대교의 서적들이 과연 기독교 신앙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조사할 것을 위임했다. 이 일을 맡은 사람중의 하나가 요하네스 로이힐린 Johannes Reuchlin

10) Hans J. Schütz: a. a. O., S. 1

11) 여기 소개하는 사례들은 독일 Wolfenbüttel의 Herzog August Bibliothek가 검열과 저항을 주제로 개최한 전시회의 카탈로그 『검열에 맞서서 - 포박당한 언어와 유럽의 자유 -』(1991)와 Reclam 문고의 『독일의 문학 검열』(1988)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혀둔다.

12) Vgl. Hans J. Schütz: a. a. O., S. 1

(1455-1522)이었다. 그는 라틴어와 희랍어에 능통하였고 히브리어도 공부한 법률가였다. 그의 저술 『검안경 Augenspiegel』에서 로이힐린은 페퍼코른의 무고를 근거없다고 공박하고 유대인에 대한 강제적 기독교 세례나 검열, 분서 등의 조치에 반대하였다. 로이힐린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로마법에 의거하여 평등하므로 유대인 박해는 로마법에도 교회법에도 저촉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유대인들의 서적이 명백히 기독교 신앙에 저촉되지 않는 한 탈무드를 유대인들에게서 빼앗고 억압하고 금지할 수 없고, 그들도 독일제국의 신민이므로 유대교회 시나고개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로이힐린은 이교도의 서적에 대한 권리를 옹호한 독일 최초의 휴머니스트로 기록되고 있다.¹³⁾ 그러나 그의 반대자들은 로이힐린이 유대인에게 매수되었다고 고발하였다. 그는 이단이라는 죄목으로 종교재판에 회부되었지만 1514년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유대인들의 서적을 둘러싼 분쟁은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로이힐린은 1520년에 “종교개혁의 동조자”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의 저서 『검안경』은 금지되었다. 그러나 그후 『검안경』을 금서 처분했었던 교황 레오 10세가, 그때까지 손으로 쓴 필사본 밖에 없던 탈무드를 최초로 인쇄하도록 했고, 독일의 몇 군데 대학에는 히브리어 교수직을 두기에 이른다. 바빌로니아의 탈무드를 인쇄한 다니엘 봄베르크 Daniel Bomberg는 플랑드르 지방의 기독교인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인쇄소에 유대인 인쇄공과 교정원들을 고용했고, 1520년부터 200편 이상의 히브리어 작품을 출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결국 이 싸움은 문학과 서적 출판의 승리로 끝났다고 볼 수 있다.

2.4. 계몽주의에서 청년 독일파까지

17세기 영국에서는 존 밀턴 John Milton (1608-1674)이 언론 출판의 자유를 위해 과감히 나섰다. 검열없는 자유언론을 촉구하기

13) Vgl. ebenda. S. 2.

위한 영국 의회에 보낸 연설문에서 그는 “사람을 살해하는 자는 이성을 부여받은 피조물, 즉 신의 초상을 죽이는 것이다. 그러나 좋은 책을 폐기하는 자는 이성 자체를 죽이는 것이다.”¹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서면 연설은 크롬웰과 의회에 의하여 거부되고 금지당했다. 그의 저술 『영국 민족의 옹호』는 왕권 신수설에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1651년 파리와 툴루즈에서, 1660년에는 영국에서 형집행관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불태워졌다. 밀턴 자신이 화형을 면한 것은 그나마 영향력있는 옹호자들의 덕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처음에 허가없이 출판이 감행되었던 밀턴의 유고 『국가문서』가 그의 사후 20년인 1694년에, 그리고 1758년에는 그의 유명한 작품 『실락원』이 이태리어로 번역되어 가톨릭 교회의 금서목록에 오른 것을 보면, 밀턴의 투쟁은 유럽의 독서계에서 빠른 결실을 본 셈이다.

독일에서는 18세기 후반에 와서야 계몽주의 작가들이 언론 출판의 자유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 중에서도 크리스치안 다니엘 슈바르트 Christian Daniel Schubart (1739-1791)의 필화사건은 독일 전역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가 발간한 『독일 연대기 Deutsche Chronik』에 실린 과격한 비판기사로 인하여 슈바르트는 1775년 아우구스부르크에서 추방당하여 울름으로 가게 되었다. 그는 그곳에서도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독일 제후들과 성직자들, 심지어는 현지를 다스리는 카를 오이젠 공작의 용병 매매와 사생활을 공박하였다. 그는 1777년에 체포 구금되어 재판 절차도 없이 10년간 뷔르템베르크의 감옥에 격리 수용되었다. 김필이 엄격히 금지된 옥중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는 굽히지 않고 제후들의 압정에 저항하는 시들을 썼고, 자서전을 집필하였다. “나에게는 책도, 종이도 칠판도, 펜도 연필도, 광을 낸 못조차 없었다 — 그래도 나는 이렇게 내 생애에 관한 이야기를 썼다. 옆 방에 나보다 자유로운 동료 죄수가 있어서, 두꺼운 벽을 통해 그에게 나의 생애를 구술하여 받아쓰게 했

14) Zitiert nach: Hans J. Schütz: a. a. O., S. 3: „Wer einen Menschen mordet, tötet ein vernunftbegabtes Geschöpf, das Ebenbild Gottes. Wer aber ein gutes Buch vernichtet, der tötet die Vernunft selbst.“

던 것이다.”¹⁵⁾라는 그의 서술이 처참한 그의 옥중생활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가 석방되기 전에 공작은 슈바르트의 시집을 국립인쇄소에서 발간하여, 적지않은 판매수입을 올렸다. 한두해 후에 감옥에서 풀려난 슈바르트는 궁정시인이 되어 그의 잡지를 『슈바르트의 조국 연대기』라는 제목하에 복간하는 타협의 길을 택했고, 비판적인 글도 쓰지 않았다. 그 대신에 그는 그의 잡지에 프랑스 혁명에 대하여 상세히 보도하고, 헌법과 혁명의 노래들을 게재하였다. 관청에서는 그가 다른 주로 가서 공작에 대한 투쟁을 계속할 것을 두려워하여 이 잡지를 국립인쇄소에서 발간하도록 허락했다. 이와같이 정치적, 경제적 이해가 뒤엎힌 관과 저항언론의 동반관계는 독일 검열 제도의 역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희귀한 일이었다.

슈바르트의 경우는 물론 서적 탄압의 극단적인 사례이기는 하다. 그러나 계몽주의와 프랑스 혁명사상이 독일로 옮겨오는 것을 두려워한 제후들이 출판에 대한 사전 검열을 강화한 것이 일반적 추세였다. 예외의 경우로 기록된 프로시아의 프리드리히 대제 Friedrich der Große는 정치적으로는 절대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학문과 예술을 사랑하고 시대 조류에 대하여 당시로서는 개방적인 사고를 가져서 ‘계몽 절대주의 Aufgeklärter Absolutismus’의 군주로 꼽힌다.¹⁶⁾ 그는 당시에 매우 위험한 계몽주의자이자 무신론자로 지목되어 프랑스에서 서적 탄압의 대상이었던 볼테르 Voltaire (1694-1778)와도 교분을 맺었다.

따라서 프리드리히 대제의 치세(1740-1786)에는 언론 출판에 대한 검열이 완화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요제프 2세 Joseph II. 치하(1765-1790)의 오스트리아도 과감한 개혁과 관용의 시대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강한 반전을 보인 것은 프로시아의 프리드리히 빌헬름 2세가 1788년 빌르너 Johann Christoph von Wöllner라는 인물을 문화성 장관에 임명하고 언론 출판의 질서를

15) Zitiert nach: H. J. Schütz: a. a. O., S. 3.

16) Vgl. Helmut M. Müller: Schlaglichter der deutschen Geschichte. Mannheim 1986. S. 117 u. S. 121 f.

회복할 것을 지시하면서부터였다. 빌르너는 즉시 신학분야의 계몽주의를 전면 금지하는 칙명을 내렸으나 검열관들과 재판부의 거부로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그러자 그는 1791년에 '종교매체 검토 위원회'를 두어 신학과 윤리, 도덕분야 정기 간행물을 사전검열하도록 했고, 이듬해 칸트 Emanuel Kant의 논문 「순수이성 한계내의 종교」가 월간 베를린지에 게재되는 것을 금지했다. 이후 칸트는 위협을 느끼고 종교문제에 관한 언급을 자제했지만, 괴니히스베르크의 신학 및 철학 강사진에게는 칸트의 종교학을 강의에서 다루지 못하게 하는 훈령이 내렸다.¹⁷⁾

절대 권력의 유지에 위협한 요소가 되는 출판물의 영향을 우려하여 가장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 지배자는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히였다. 그는 분량이 작아 대중에 대한 침투력과 전파력이 강한 시사적, 정치적 저술과 정기 간행물에 대하여 전면적인 검열을 도입하기 위하여 1819년 8월 카를스바트 Karlsbad에서 회의를 소집했다. 오스트리아와 프로시아를 비롯하여 독일내 8개주가 회의에 참가해서 이른바 '카를스바트 결의 Karlsbader Beschlüsse'¹⁸⁾를 채택하고 다음달에 연방회의에서 만장일치의 인준을 얻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의 집회 결사가 금지되고 독일내 모든 대학교수와 학생들의 동태를 감시하게 되었다. 또 "인쇄면 20페이지 이하"¹⁹⁾의 신문 잡지와 기타 출판물에 대하여 사전 검열을 도입하였다. 특히 "청소년 정서에 대한 합법적인 영향력의 남용이나 공공질서와 안정에 적대적이거나 기존 국가제도의 기초를 전복하는 파괴적 학설의 유포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요직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명백히 드러낸"²⁰⁾ 대학 교수들은 가차없이 해임하고, 독일내의 다른 주에서도 다시는 교수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1848년까지의 30년간은 문학표현의 자유가 온갖 사찰과 경찰력에 의하여 극도로 탄압받는 시기였다. 왜냐하면 문학은 궁정시인의 시대를 벗어나서,

17) Vgl. ebenda. S. 5.

18) Ebenda. S. 148.

19) Zitiert nach: ebenda.

20) Zitiert nach: ebenda.

이제 “공공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해방운동의 매체로서 정치적 실천의 출발점”²¹⁾이 되었기 때문이다. 1830년에는 구츠코 Karl Gutzkow, 헤르베크 Georg Herwegh, 뵘르네 Ludwig Börne, 하이네 Heinrich Heine 등 일단의 작가들이 문학의 정치화를 목표로 청년독일파 Junges Deutschland의 기치아래 절대주의 국가관과 로마 가톨릭 정교의 신봉을 거부하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였다. 메테르니히를 중심으로 한 검열 기관이 필연적으로 이들에 대한 탄압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결과 검열에 대항하는 여러형태의 투쟁 자체가 이 시기의 문학과 창작의 중심 테마를 이루게 되었다. 작가들은 검열을 피하기 위하여 풍자와 아이러니, 언어의 다의성 등을 구사하는 새로운 기법을 개발해야 했고, 머릿말 또는 후기 등에서 자신의 진정한 의도를 밝히고자 시도하였다. 검열제도나 검열관이 풍자의 대상으로 작품에 등장하기도 했다. 청년독일파의 작가들은 가중되는 탄압으로 파리와 슈트라스부르크, 런던, 스위스 등지로 망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중 문학사에 큰 이름을 남긴 하이네는 1832년 저항 문학의 중심지 파리로 망명하여 외로운 투쟁을 계속하다가 그곳에서 일생을 마쳤다.

1835년 청년독일파에게 결정적 타격을 가하게 된 사건이 일어났다. 만하임에서 출판된 구츠코의 소설 『회의하는 여인 발리 Wally, die Zweiflerin』가 도덕적 인습에 집착하는 민족주의 비평가 멘첼 Wolfgang Menzel에 의하여 “병적이고 억지로 짜낸 방탕으로 가득 찬 졸작”이며 “비독일적 경향”²²⁾의 책이라고 공격당한 것이 그 계기가 되었다.

멘첼과 청년독일파 사이의 공박에 검열기관들이 가세하여 프러시아를 필두로 독일 전역에서 이 작품이 금지되었다. 구츠코는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출판사는 영업 취소를 당했다. 메테르니히는 이 사건을 청년독일파를 전면 금지하는 계기로 삼아 프랑크푸르트 연방 의회에 특사를 파견하여 청년독일파의 금지를 요청했고, 의회는 이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메테르니히의 강경 조치는 구

21) Berndt Ogan(Hg.): Literaturzensur in Deutschland. Stuttgart 1988. S. 14.

22) Ebenda. S. 36.

츠코의 소설내용이나 청년독일파의 부도덕성 또는 반종교적인 사상과는 무관하다. 그의 속셈은 문제가 된 작품을 비롯하여 청년독일파의 저술들이 지닌 대중성과 정치적 내용이 넓은 독자층에 미칠 영향력을 무력하게 만들자는 데 있었다. 이때 함부르크의 출판업자 캠페 Julius Campe (1792-1867)는 메테르니히의 의도를 무색케 하면서 금서의 보급에 눈부신 활약을 했다. 의회는 한자동맹 자유시 함부르크에 캠페에 대한 경고를 촉구한바 있었다. 그러나 캠페는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는 유능한 출판업자인 동시에 사명감을 가지고 문학의 비판적 자유를 위한 투쟁에 동참하고 있었다. 그는 함부르크의 검열기관과 합법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교묘하게 검열망을 빠져나갔다. 하이네, 구츠코, 뵘르네, 팔러스레벤 Hoffmann von Fallersleben 등 금지된 청년독일파의 작품들을 덴마크나 프랑스 등 외국에서 출판한 뒤, 독일 검열 기관의 손이 미치기 전에 정확한 시간 계산에 의하여 독일내 각 지역으로 반입, 일시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캠페는 많은 성과를 얻었다. 구츠코의 실수로 “오스트리아 침자에게 이 사실이 누설”²³⁾되어 프러시아는 캠페의 출판물에 반년간 판매금지령을 내렸지만 몰수한 책들을 폐기처분할 수는 없었다. 관할권외에 있던 함부르크의 인쇄허가가 붙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판매 금지령으로 인하여 캠페의 출판물들은 오히려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했고 더욱 많이 팔려서 당시의 정치적 반대 세력의 문학에 넓은 독자층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²⁴⁾ 일반 대중에 대한 청년독일파의 영향력을 막으려는 메테르니히의 탄압정책은 역작용을 일으킨 셈이다.

2.5. 표현의 자유의 법적 보장

프랑스 혁명과 자유주의의 물결이 독일어권으로 밀려오는 것을 강권정치로 막으려 하면 할 수록 독일 국민의 자유에 대한 열망은

23) Hans J. Schütz: a. a. O., S. 7.

24) Vgl. Edda Ziegler: Literarische Zensur in Deutschland 1819-1848. Materialien, Kommentare, München u. Wien 1983. S. 147.

더욱 커졌던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정치 소요와 저항운동이 결국 1848년의 3월 혁명으로 이어지자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는 그해 12월 독일 역사상 처음으로 언론 자유의 보장을 입법예고했다. 이듬해 3월에 제정된 제국 헌법 제4조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했고 이 조항은 앞서 살펴 본 현행 독일 기본법 제5조에 존속하고 있다.

25)

‘카를스바트 결의’에 비한다면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정과 언론 자유의 명문화는 놀라운 변화였다. 1874년에는 언론법이 제정되어 출판물에 대한 사전 검열의 폐지를 규정했다. 그러나 별도 규정이 없었던 사후 검열과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다만 검열의 실제 관할권이 경찰에서 사법부로 옮겨가면서 다소나마 자유로운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었을 뿐이다.

헌법에 보장된 문학 표현의 자유가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3월 혁명 이후 꼬박 100년의 암흑기를 거쳐야 했다. 1848년 3월 혁명은 실패로 끝났다. 왕을 폐하고 자유 선거에 의한 의회와 대통령 중심의 민주정부를 수립하려던 급진주의자들의 기대는 무산되고, 사회 분위기가 보수 회귀로 경직되면서 출판물에 대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되었던 것이다. 문학 작품에 대한 당국의 금지 이유는 대개 공공의 안녕과 윤리 도덕을 저해하는 ‘군왕 모독’, ‘신성 모독’, ‘외설’ 등이었다.²⁶⁾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언제나 정치권력의 유지와 신장이라는 의도가 담겨 있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1830년대의 청년독일파에 대한 규제는 정치적 반대 이념과 혁명사상을 유포하는 문학에 대한 탄압이었다. 그보다 40여년 후인 1878년에 제국의회 의 집권당들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민주주의 규제 조치법²⁷⁾’을 제정한 것은 정치적 반대세력인 사회민주당의 모든 장외투쟁 가능성을 박탈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 규제 조치법에 따라 사회주의 이념을 표방하는 40개 정기 간행물과 213개 부정기 간행물에 대

25) Vgl. Horst Hildbrandt(Hg.): Die deutschen Verfassungen des 19. und 20. Jahrhunderts. Paderborn 1977. S. 21.

26) Vgl.: Bernd Ogan(Hg.): a. a. O., S. 39.

27) Vgl. ebenda.

하여 금지 조치가 내렸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회민주당은 쥐리히에서 당기관지 「사회민주인 Der Sozialdemokrat」을 발간해서 비밀 운반 조직을 통하여 독일 국내로 반입했다. 초판 1000부로 시작한 「사회민주인」은 사회민주주의 규제법이 폐지된 1890년에 발행 부수가 10배에 이르는 성과를 얻었다.²⁸⁾

빌헬름 II세 황제의 「신절대주의」²⁹⁾ 치세 (1888~1918)에 문학의 자유는 다시 한 번 큰 수난을 겪는다. 황제는 스스로 예술과 문학에 관한 토론의 전면에 나서서 “내가 지적인 법칙과 한계를 넘어서는 예술은 더이상 예술이 아니다.”³⁰⁾라는 주장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1898년 베를린 왕립극장 관계자들에게 “우리의 찬란한 조국 독일의 지고한 정신자산의 보존”³¹⁾을 위하여 연극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것은 곧 검열기관의 관심이 특히 연극 부문에 집중된다는 뜻이기도 하였다. 표현주의, 자연주의, 사실주의로 분류되는 작가들이 이 시기의 탄압과 싸워야 했다. 베데킨트 Franz Wedekind의 「판도라의 상자 Büchse der Pandora」를 비롯한 거의 모든 연극들은 「외설」이라는 이유로, 하우프트만 Gerhart Hauptmann의 「직조공들 Die Weber」은 1844년의 직조공들의 봉기를 다루었다는 이유로 공연 허가를 얻지 못하고 성가신 재판과정을 겪어야 했던 대표적인 예이다. 베데킨트는 풍자적인 잡지 「셈플리치씨무스 Simplicissimus (1896-1898)」의 편집동인으로서 황제를 비판하는 자신의 발라드를 실어 ‘군왕 모독죄’로 필화를 겪기도 했다.

일차대전 (1914-18)중의 전시체제에서는 문학의 자유가 더욱 설

28) Vgl. Hans J. Schütz: a. a. O., S. 7.

29) Bernd Ogan(Hg.): a. a. O., S. 39.

30) Zitiert nach: Hans Schwerte: Deutsche Literatur im Wilhelminischen Zeitalter. In: Wirkendes Wort 14: Heft 4. S. 260.: „Eine Kunst, die sich über die von Mir bezeichneten Gesetze und Schranken hinwegsetzt, ist keine Kunst mehr.“

31) Dieter Breuer: Geschichte der literarischen Zensur in Deutschland. Heidelberg 1982. S. 189.: „Erhaltung der höchsten geistigen Güter unseres herrlichen deutschen Vaterlandes.“

자리가 없게 되었다. 계엄하의 공보처에서 발행한 사전 검열 지침은 언론의 첫번째 임무가 “각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인 힘을 북돋아 전 국민의 힘을 강화”³²⁾하는데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같은 군 검열당국의 통제와 애국심을 강조하는 전시의 분위기로 인하여 언론 매체들은 자체 검열 Selbstzensur의 경향이 뚜렷해졌다. 전장에서 체험담과 전쟁을 찬양하는 기사들을 닦아두어 심는 반면 비판적인 논설이나 문학작품의 게재를 스스로 금기시하게 된 것이다. 1914년에 뮌헨의 주간지 『Zeit im Bild』가 하인리히 만 Heinrich Mann (1871-1950)의 소설 『충복 Der Untertan』의 게재를 중단한 것이 그 좋은 예이다. 하인리히 만은 이미 1910년에 그의 문화 비평적 에세이 『정신과 행동 Geist und Tat』에서 “정신”과 “권력”이 예로부터 적대관계에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전쟁 선전물의 홍수속에 대중이 오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문학을 통한 반대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이면의 진실을 밝히고자 한 지성인들의 노력은 효과를 얻지 못했다. “승리를 향한 국민의 확고한 신념이 흔들리는 인상을 주는”³³⁾ 어떠한 글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검열당국이 “위대한 민족적 목표에 계속 헌신하고 독일 국민의 단합을 해치는 어떠한 위협”³⁴⁾도 피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검열지침은 훗날 제3제국의 전쟁선전에서 드러나는 민족주의 색채를 앞질러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6. 바이마르 공화국과 제3제국의 문화정책

1919년 8월 발효된 바이마르 헌법은 제142조³⁵⁾에서 예술의 자유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물론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문학의 사전 검열이 없어졌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국가 기관에 의한 검열 대신에, 국민 각자가 “부도덕성”, “외설”, “신성모독”, “모욕”과 “무

32) Zitiert nach: Bernd Ogan(Hg.): a. a. O., S. 44.

33) Dieter Breuer: a. a. O., S. 212.

34) ebenda.

35) Vgl. Horst Hildbrandt(Hg.): a. a. O., S. 103.

고"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도록 형법에 장치를 해 놓았다. 헌법에 보장된 예술의 자유는 실제로 법의 운용에 있어서 빌헬름 황제 치세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검열관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 판사들이 헌법의 적용에서 대부분 매우 완고한 자세를 보였고 과거의 경찰 당국과 유사하게 대처했기 때문이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주로 우파 언론이 앞장서서 문제가 되는 서적에 대하여 공개 토론을 벌임으로써 개인이나 단체들이 그러한 작품 또는 공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도록 유도한 것이었다. 1922년에 있었던 슈니츨러 Arthur Schnitzler (1862-1931)의 희곡 『라이겐 Reigen』에 대한 재판은 "바이마르 공화국내 보수적 사회계층들의 정치적, 사회적, 사회 심리학적 상황을 깊숙이 통찰할 수"³⁶⁾ 있게 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라이겐』은 바이마르 공화국 이전인 1897년에 완성되어 1900년에 200부 한정 부수로 동호인들을 위해서 조심스럽게 간행되었던 것이었다. 성의 문제를 다룬 이 작품은 1903년 비엔나의 한 출판사가 출판을 감행했는데, 첫해에 27,000부, 10년 동안에 68,000부가 팔리는 반향을 얻었다. 여러차례의 우여 곡절과 연출의 수정끝에 1920년 베를린에서 이 작품이 초연되자 언론들이 연극계의 주문으로 예의 공격을 시작했고 슈니츨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의설"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영향력있는 연극 비평가들의 증언으로 결국 무죄판결을 받기는 했으나 슈니츨러는 이 재판 과정에 혐오를 느껴, 그 이후의 모든 공연을 거부하고, 전집에도 『라이겐』을 넣지 않았다. 같은 시기에 카를 아인슈타인 Carl Einstein (1885-1940)의 희곡 『나쁜 소식 Die schlimme Botschaft』은 "신성모독"과 "교회에 대한 경멸"로 인하여 비슷한 파란을 겪었다. 토마스 만 Thomas Mann을 비롯한 작가들과 법률가들, 심지어는 신학자들까지 이 작품에서 신성모독의 요소를 찾지 못하였다는 의견서를 썼지만, 아인슈타인과 로볼트 출판사는 벌금형 또는 각각 6주와 3주의 금고형을 받았다. 투홀스키 Kurt Tucholsky (1890-1935)나 베허 Johannes R. Becher (1891-1958)등 공산주의자

36) Bernd Ogan(Hg.): a. a. O., S. 55.

들도 독일 국민당이나 국가사회당과 같은 우익 정당들의 비공식적인 압력과 검열에 직면해 있었다. 법에 보장된 것과 달리 사회 지배 계층으로부터 여러가지 위협을 받아온 바이마르 공화국의 예술의 자유는 1926년 “저속 음란 서적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 Gesetz zur Bewahrung der Jugend vor Schmutz und Schundschriften”의 제정으로 더욱 제한을 받게 되었다. 청소년 보호를 핑계로 사실은 마음에 들지 않는 서적을 금지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이 법의 제정에 대하여 토마스 만, 하인리히 만, 쿠르트 투홀스키와 그밖에 많은 작가들이 정면으로 반대하는 글을 발표했으나 허사였다.

바이마르 공화국이 말기로 접어들면서 사회 분위기는 더욱 경직되었다. 1927년 독일 국가사회주의 노동당 NSDAP은 “독일 문화를 위한 투쟁 연합”을 창설하고 독일 문화계 인사들을 나치스의 노선에 동조하도록 포섭하기 시작하였다. 1929년 튀링엔 지방의 내무 겸 국민 교육성 장관이 된 빌헬름 프리크 Wilhelm Frick은 모든 문화 기관과 교육기관에서 “비독일적”인 인물과 사상적 영향력을 제거하였다. 또 공공 박물관과 도서관에서 현대 예술과 현대 문학을 축출하고 비판적 예술가와 서적, 공연 등에 대하여 금지령을 내렸다. 이것은 후에 그가 내무성 장관으로 활약할 히틀러 정권하의 문화정책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는 조치로서 주목된다. 되블린 Alfred Döblin이 한 편지에서 “히틀러는 1933년보다 여러해 앞서서 이미 정권을 장악했다.”³⁷⁾고 지적했듯이 나치스에 의한 강압적 문화 정책의 공포분위기는 바이마르 공화국 때에 이미 단계적으로 준비된 것이었다.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에는 특히 영화 상영 금지가 많았다. 르마르크 Erich Maria Remarque (1898-1970)의 소설을 헐리우드에서 영화화한 『서부 전선 이상없다 Im Westen nichts Neues』는 베를린에서 초연되던 날 나치스 행동대원들의 방해로 공연이 중단되었다. 결국 이 작품은 영화 검열당국에 의해 독일의 명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금지되었다. 브레히트 Bertolt Brecht (1898-1956)의 작

37) Zitiert nach: Hans Albert Walter: Deutsche Exilliteratur 1933-1950. Bd. 1: Bedrohung und Verfolgung bis 1933. Darmstadt u. Neuwied 1972. S. 121.

품들이 민족주의적 우파 세력들에게서 가장 큰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 『서푼짜리 오페라 Dreigroschenoper』가 재판에 회부된 뒤 영화 『쿨레 밤페 또는 세계는 누구의 것인가? Kuhle Wampe oder wem gehört die Welt?』(1932)가 “공산주의적 경향성”³⁸⁾ 때문에 금지되었다. 이 작품이 “공공의 안전과 질서” 그리고 국가의 존립을 좌우하는 공익을 위협한다는 것이었다.

1933년 독일의 통치권을 장악한 히틀러 정권은 집권 후 5일째 되는 2월 4일에 ‘독일 국민보호를 위한 제국 대통령령’로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였다. 나치스의 이념에 동조하지 않는 모든 출판물이 금지되었다. 독일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제3제국의 강압적 문화 “통제 Gleichschaltung” 정책의 원인은 정권의 불안정한 출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³⁹⁾ 온갖 정치 선전과 테러를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국가사회주의 노동당 NSDAP’은 1933년 3월 제국의 회 선거에서 43.9%의 득표율을 기록해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데 실패하였다. 따라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비판적 언론을 차단하고 정부가 원하는 대로 여론을 조작하는 방법을 택했던 것이다. 이러한 문화정책의 첫 단계로서 나치스정권은 프러시아 예술원이 문학부문 의장 하인리히 만과 케테 콜비츠 Käthe Kollwitz를 제명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두 사람은 3월 선거에서 사민당 SPD와 공산당 KPD의 연합 전선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한 반나치스적 비판세력이었다. 당시 예술원장이었던 실링 Max von Schilling은 저항없이 두 사람을 제명하고 다른 문학부문 회원들에게는 새 정부에 대한 충성의 서약을 강요했다. 리카르다 후흐 Ricarda Huch (1864-1947)가 이에 항의하여 예술원을 탈퇴한 것을 필두로 비판적 문인들이 뒤를 따랐다. 예술원에는 나치스 노선에 충실한 회원들만이 남아있거나 새로 자리를 차지했고 명칭도 ‘독일 문예원 Deutsche Akademie der Dichtung’으로 바꾸었다. 나치스정권은 1933년 2월 27일에 있었던 제국의회 방화사건을 공산주의자들을 제거하는 계기로 삼았을 뿐 아니라, 블랙 리스트에 올라있

38) Zitiert nach: Berndt Ogan(Hg.): a. a. O., S. 61.

39) Vgl. ebenda. S. 82.

던 비판적 지식인들을 체포하는 기회로 이용하였다. 그해 5월에 새 정권은 비판 세력의 말살을 위한 두번째 대사건을 연출하였다. 친정부 대학생 단체가 1933년 4월 12일부터 5월 10일까지 “비독일적 정신의 배제”를 모토로 12개 원칙을 선언하고 전국의 대학도시들을 중심으로 “언어와 서적의 순수성”⁴⁰⁾을 지키기 위하여 “비독일적 서적” 특히 유대계통의 서적에 대한 배척 운동을 일으켰다. 분서목록이 작성되고 서점과 도서관에서 금서들이 압류되었다. “즉흥적 국민의회”⁴¹⁾의 반영이라는 이 거국적인 운동은 물론 괴벨스 Joseph Goebels를 비롯한 나치스 문화정책 담당자들에 의하여 정확히 계획되고 연출된 것이었다. 대규모 행동이 시작된지 4주째인 1933년 5월 10일은 독일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상 영원히 잊혀질 수 없는 날이 되었다. 한밤중에 베를린 시내 중심가에서는 20,000권에 달하는 서적을 쌓아 불태우는 의식이 거행되었다. 문화선전성 장관 괴벨스의 “장중한” 나치스 찬양연설에 이어 히틀러 친위대 SA와 SS 군악대가 행진곡을 연주하는 가운데 대학생 대표가 소리 높여 제창한 “불의 주문 Feuersprüche”은 당시의 분위기를 생생히 전해주고 있다.

9명의 대학생들이 각각 역할을 나누어 격양된 화려체 구호로써 하인리히 만, 에른스트 글레저 Ernst Glaeser, 에리히 케스트너 Erich Kästner 지크문트 프로이트 Sigmund Freud 등 작가들의 이름을 들어 그들의 책을 화염에 던지는 선언을 했다.

첫번째 구호: 계급투쟁과 유물주의를 반대하고 국민공동체와 이상주의적 생활기준을 위하여! 나는 마르크스와 카우츠키의 저서들을 불꽃에 던진다.

두번째 구호: 퇴폐와 도덕적 타락에 반대하여! 가정과 국가의 기강과 예절을 위하여! 나는 하인리히 만과 에른스트 글레저, 에리히 케스트너의 저서들을 불꽃에 던진다.

40) ebenda. S. 94.

41) ebenda. S. 96.

[...]

네번째 구호: 영혼을 분열시키는 충동적 삶의 과대 평가에 반대하고, 인간 영혼의 고결성을 위하여! 나는 지크문트 프로이트의 저서들을 불꽃에 던진다.

[...]

여섯번째 구호: 국민에게 낮은 민주주의적, 유대적 특징을 가진 저널리즘에 반대하고, 국가 건설 작업에의 책임감 있는 참여를 위하여! 나는 테오도어 볼프와 게오르크 베른하르트의 저서들을 불꽃에 던진다.

일곱번째 구호: 일차대전의 병사들에 대한 문학적 배반에 반대하고, 성실한 정신에 입각한 국민교육을 위하여! 나는 에리히 마리아 르마르크의 저서들을 불꽃에 던진다.

[...]

아홉번째 구호: 파렴치와 월권에 반대하고, 불멸의 독일 국민정신에 대한 존중과 경의심을 위하여! 불꽃이며, 투홀스키와 오씨에츠키의 저서들도 삼켜라!⁴²⁾

베를린 이외에도 독일 대학도시들을 중심으로 축제와도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지는 분서의 대 활극이후, “유대적 주지주의의 극복”⁴³⁾을 내세운 나치스에 의한 유대인 박해는 더욱 극심해졌다. 강권에 의한 무차별한 문화계 탄압정책에 반대하는 많은 문인들이 체포, 구금되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껴 국외로 망명했음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있는 바와 같다. “책을 불태우는 자는 인간도 불태운다.”는 하이네의 예언이 600만명 이상의 유대인이 가스실 등에서 학살되는 무서운 현실로 나타나서, 나치스의 분서 사건은

42) Bernd Ogan(Hg.): a. a. O., S. 100 f.

43) 주명철: 바스티유의 금서, 서울 1990. S. 12.

매우 상직적인 의미를 갖는다. 1933년부터 제3제국이 멸망하는 1945년까지 문학표현의 자유는 인류역사상 가장 어두운 암흑기를 경험하였다.

3. 결 론

독일 문학권을 중심으로 검열제도의 기원에서 제 3제국에 이르기까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와 이에 맞서는 투쟁의 역사를 살펴본 결과 다음의 몇가지 일반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진실을 규명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문학의 본질로 인하여 문학표현의 자유는 그 시초부터 맹목적 복종을 요구하는 정치적 종교적 지배권과 마찰을 빚어왔다. “이성의 빛이 [...] 사회적 모순을 낱알이 폭로하여 세상에 고발”⁴⁴⁾하는 것을 막아 보려는 지배권력의 몸부림이 격렬해진 것은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이후였다. 이것은 역으로 문학의 대중에 대한 영향력을 입증해 주고 있다.

둘째, 진실을 호도하려는 종교 집단이나, 정치적 지지 기반과 정통성에 문제가 있는 정권일수록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신적 비판세력인 문학의 자유를 탄압해 왔다. 그러나 어느 시대나 이러한 억압정책은 일시적 효과에 비해 몇배나 더 큰 저항에 부딪혔다. 긴 안목으로 볼 때 검열제도는 오히려 저항 문학의 효과를 높이고 지배 체제의 말로를 재촉하는 역작용을 일으켰음이 입증되었다.

셋째, 오늘날의 문학이 누리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중세 이후 탄압과 희생이 거듭되면서 과감한 발언으로 맞서온 저술가들의 투쟁의 결과이다. 그러나 위험을 무릅쓰고 금지된 양서들을 발간하고 보급한 출판 업자와, 비판적 계몽서적을 찾아 읽는 안목을 가졌던 광범위한 독자층이 이러한 투쟁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이들을 통하여 문학은 19세기 이후 공공 생활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해방운동의 매체로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44) ebenda. S. 97

수 있었다.

네째, 20세기 전반기에 독일 문학권이 겪었던 시련과 반세기 후 우리 정치의 격동기에 우리가 경험한 수많은 사례들은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대부분의 경우 현실적 설득력이 있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특정 집단의 정치적 의도가 이면에 도사리고 있어서 정권에 의하여 법이 남용될 위험이 높다.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당연히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1848년의 독일 헌법제정과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에 명시된 예술의 자유의 경우를 볼 때, 문학표현의 자유가 실현되기 위하여는 법제정보다 성실하고 타당한 법의 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 문학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이 실효를 발휘하기 위하여는 건전한 지적 욕구와 이성을 가진 광범위한 독자층과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한 공공여론의 형성이 필요 불가결하다. 일차대전 당시 독일 언론 출판계가 스스로 본연의 비판적 자세를 버리고 전쟁 선전에 앞장섰던 사실과,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인 이해가 뒤엎힌 언론계 상호간의 “동업자 봐주기”등의 자체검열도 명백히 외부적인 탄압 못지않게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위의 여러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문학이 무제한적이고, 절대적인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명제를 뒷받침하는 충분조건이 성립하기에는 부족하다. 여기서 검토된 사례들은 금서의 저작자들 가운데서 문학사에 큰 이름을 남기고 전세계 독자들의 지지를 받은 성공적 경우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종종 있었던 “외설” 시비에서 처럼 현실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조차 읽고나서 불쾌감과 인간적인 모욕감을 느끼고, 그러한 필화 사건에 아무도 선뜻 나서서 저자의 편에 서주지 않는 저속한 출판물들이 있다. 이 경우 판단은 독자에게 맡기고 상업주의에 편승한 저질 출판물들을 방치하는 것이 무책임한 태도는 아닐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미풍양속의 보존과 사회의 안전, 공공질서의 유지라는 명제가 과연 우리의 현대 생활에서 어느 선까지 타당성을 갖느냐는 의문도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답에 한걸음 더 접근하기 위해서는 2차대전 후 우리와 같이 분단으로 인한 안보논쟁이 있었던 서독과 동독의 경우에 대한 검토가 또 하나의 연구과제로 부각된다.

현대 독일의 상황을 통독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분석하고 반세기의 시간적 차이를 보여주었던 우리의 현재와 비교해 보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실명이 거론되는 구체적 사례와 판례들을 조사하는 부담을 안아야 한다. 올바른 시각의 정립을 위하여 기대되는 작업이다. “검열은 시행되지 아니한다. 진정 검열이 시행되지 않는가?”⁴⁵⁾라는 논설의 도전적 제목이 시사하듯이 의사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자유롭다는 현대독일에서도 검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기에 이 과제는 더욱 흥미롭다.

45) „Eine Zensur findet nicht statt. Findet keine Zensur statt?“ In: Kürbiskern 2 (1979).

참고문헌

- Breuer, Dieter: Geschichte der literarischen Zensur in Deutschland. Heidelberg 1982.
- Enzensberger, Hans Magnus: Poesie und Politik. In: Einzelheiten II. Frankfurt / M. 1970.
- Habermas, Jürgen: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Untersuchungen zu einer Kategorie der bürgerlichen Gesellschaft. Neuwied u. Berlin 1969.
- Herzog August Bibliothek (Hg.): Der Zensur zum Trotz. Das gefesselte Wort und die Freiheit in Europa. Wolfenbüttel 1991.
- Hildbrandt, Horst (Hg.): Die deutschen Verfassungen des 19. und 20. Jahrhunderts. Paderborn 1977.
- Müller, Helmut M.: Schlaglichter der deutschen Geschichte. Mannheim 1986.
- Ogan, Bernd (Hg.): Literaturzensur in Deutschland. Stuttgart 1988.
- Reallexikon der deutschen Literaturgeschichte. Begr. v. P. Merkur u. W. Stammler, bearb. v. W. Kohlschmidt u. W. Mohr. Bd. 4. Berlin 1984.
- Schreer, Werner: Die Bücherzensur in der katholischen Kirche in Geschichte und Gegenwart. In: Der Zensur zum Trotz. a a O., S. 15-21.
- Schütz, Hans J.: Literaturfreiheit und Buchzensur in Europa. In: Der Zensur zum Trotz, a a O., S. 1-9.
- Schwerte, Hans: Deutsche Literatur im Wilhelminischen Zeitalter. In: Wirkendes Wort 14: Heft 4.
- Walberer, Ulrich (Hg.): 10. Mai 1933. Bücherverbrennung in Deutschland und die Folgen. Frankfurt / M. 1983.
- Walter, Hans Albert: Deutsche Exilliteratur 1933-1950. Bd. 1: Bedrohung und Verfolgung bis 1933. Darmstadt u. Neuwied 1972.

Wulf, Jeseph: Literatur und Dichtung im dritten Reich. Eine Dokumentation. Frankfurt / M., Berlin u. Wien: 1983.

Ziegler, Edda: Literarische Zensur in Deutschland 1819-1948. Materialien und Kommentare. München u. Wien 1983.

주명철: 바스티유의 금서, 서울 1990.

팽원순: 매스커뮤니케이션 법제이론, 서울 1988.

Zusammenfassung

Meinungsfreiheit und Zensur in der
deutschsprachigen Literatur (I)

He Yong Chong (Han Yang Uni.)

Die Literatur gründet sich auf ungegrenzte Freiheit der kreativen Meinungsbildung und -äußerung des Menschen. Dagegen gab und gibt es institutionalisierte Mächte, die mit verschiedenen Mitteln und um jeden Preis diese Freiheit zu beschränken oder gar zu vernichten suchen. Bekanntlich ist der Konflikt so alt wie die Literatur selbst. Es scheint im Wesen der Literatur zu liegen, die sich zur Entdeckung und Darstellung der Wahrheit verpflichtet.

In der vorliegenden Arbeit ist versucht worden, die Entstehungsgeschichte der Begriffe Literaturfreiheit und Zensur im deutschsprachigen Raum zu überprüfen, und deren Praxis vom 16. Jahrhundert bis zum Dritten Reich zu beleuchten. Die Arbeit soll als erster Schritt dazu dienen, die Frage nach der Freiheit der Literatur und ihrer Grenze zu klären. Das Interesse wurde vor allem durch die Erlebnisse aktueller Unterdrückungsfälle erweckt, die politische Umbrüche im Umstrukturierungs- und Modernisierungsprozeß der koreanischen Gesellschaft in den letzten Jahrzehnten mit sich gebracht hatten. Die Situation in Deutschland und in Korea weist auf gewisse Gemeinsamkeiten auf, und zwar mit einem Zeitunterschied von einem halben Jahrhundert. An den

Beispielen in Deutschland wurde deutlich, daß sich die Zensurmaßnahmen in Zeiten religiöser oder politischer Legitimationskrisen und gesellschaftlicher Veränderungen zuspitzen. Aber der Zensur zum Trotz wurden selbst in den schlimmsten Jahren des Dritten Reichs offene Meinungen geschrieben, gedruckt und vor allem gelesen. Verbotene Bücher hatten Erfolg. Das ist ein Beweis dafür, daß die Freiheit des Menschen letzten Endes nicht unterdrückt werden kann.

Dies begründet aber noch nicht den Anspruch der Literatur auf unbegrenzte Freiheit. Denn hier wurden fast ausschließlich diejenigen Schriftsteller berücksichtigt, die zu jeweiligen Zeiten schwer gegen Zensur zu kämpfen hatten, aber später in der Literaturgeschichte ihren Triumph und Anerkennung feiern durften. Die Frage, ob es nicht verantwortungslos ist, die Bewertung aller Schriften einschließlich stark kommerziell orientierter Bücher dem Leser zu überlassen, bleibt unbeantwortet. Daher wäre eine weitere Untersuchung angebracht, die sich mit der Zensur in der Zeit der Teilung Deutschlands und nach der Wiedervereinigung beschäftigt, um einen Vergleich mit der gegenwärtigen Situation Koreas ziehen zu können.